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현 의원 (찬성자 9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086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19. 10. 22.

## 2. 제안이유

-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후 외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해제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살수 등의 세척조치를 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함.
-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살수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노력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가.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의 계획수립(안 제3조2항제7호)

나. 어린이 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의견

### ■ 개 요

-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추가시키는 한편,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3조제2항	<p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	<p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</li> <li>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
제7조의2	<신 설>	<p>제7조의2(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)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
- 먼저, ‘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’을 안전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안 제3조제2항의 경우는 금년 3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‘미세먼지’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으로 분류된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할만하다 하겠다.
- 다만, 어린이놀이시설 8,743개소 중 95%인 8,296개소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에 쌓인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등의 사후대응책 마련은 일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이는 국가나 서울시의 미세먼지 예방정책이 미세먼지 유발자에 대한 근원적 저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 현행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1) 및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2)에서도 ‘미세먼지관리

- 
- 1) **제8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    - ② 시·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-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  - 2) 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-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    1. 미세먼지 배출현황,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
      2.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      3. 자동차,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
      4. 사업장,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
      5.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     6.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시행계획'에 자동차·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, 사업장·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저감 등 근원적 예방대책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음.

-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국한된 미세먼지 예방대책은 대부분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현실성이 없어 이를 배제하고 대응대책만 수립토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[표]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(안 제3조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 ① (생략) 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6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	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_____  ----- 1. ~ 5. (개정안과 같음) <u>6.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- 다음으로, 안 제7조의2는 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해제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
- 현행 조례 제3조제4항<sup>3)</sup>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

7.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
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 
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

- 개정안의 해당 조항 신설 시 조항 간(현행 조례 제3조제4항 vs. 개정안 제7조의2) 충돌 발생 및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[표]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(안 제7조의2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<p><u>제7조의2(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)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삭 제>

3) 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